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법인세 환급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2항제5호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련 번호	납세의무자							9	10	11	환급 결정		14	법인세 환급 결정 내역																			
	1	2	3	4	5	8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					
														15	16	17	18	19	20	기납부세액		23	24	25	26	기납부 세액	28	29	30	31	기납 부세 액	33	34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법인명 (대표자)	법인 등록번호 (모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모법인 사업자 등록 번호)	소재지 (연락 처)	업종 (업태)	8 세적관리			세무서 (담당 자)			구분	과세 표준	지점 유보 소득	산출 세액	가산 세액 (명세)	가감계	감면분 추가 납부 세액 (명세)	수시 부과	원천 납부	과세 표준	산출 세액	가산세 (명세)	가감계	수시부 과	과세 표준	산출 세액	가산 세 (명세)	가감 계	수시 부과	본세 가산세 (명세)	무신고 등 가산세 (명세)	납부지 연가산 세
총계												당초 경정 차이																					
1	()	()	()	()					()			당초 경정 차이																					
:	()	()	()	()					()			당초 경정 차이																					

끝.

발 신 기 관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작성방법

☐ 납세의무자란

- ②모법인명(대표자): 당해 법인이 연결법인인 경우 모법인명과 모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 ③법인등록번호(모법인 등록번호): 신고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에는 모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④사업자등록번호(모법인사업자등록번호): 신고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에는 모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⑤소재지(연락처): 신고서에 기재된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하며, 연락처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⑥업종(업태), ⑦종목: 신고서상에 기재된 업종(업태), 종목을 기재합니다.
- ⑧세적관리: 신고기한 내 법인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소재지 및 변경일을 기재합니다.

☐ ⑨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⑩사업기간: 해당 신고법인의 회계연도 사업기간을 기재합니다.☐ ⑪세무서, 담당자: 해당기관의 코드 및 업무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환급결정란

- ⑫결정일은 해당 소득의 환급 결정일을 기재하며, ⑬사유는 환급사유를 기재합니다.

☐ ⑭구분: "당초"는 "경정"으로 통보되는 자료의 직전 자료를 기재하며, "경정"은 결정, 경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경정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법인세 환급 결정내역(법인세란)

- ⑮과세표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선박표준이익"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 ⑯지점유보소득: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지점유보소득을 기재합니다.
- ⑰가산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및 제76호의17서식의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 ⑲감면분 추가납부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구분, 근거법 조항, 금액 및 금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 ㉑ ~ ㉓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 중 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 법인세 환급 결정내역(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 ㉔, ㉕ 가산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및 제76호의17서식의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 ㉗, ㉘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 중 수시부과세액을 기재합니다.

☐ 법인세 환급 결정내역(환급세액란)

- ㉚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법인세액을 기재합니다.
- ㉛무신고 등 가산세: 해당 가산세 중 ㉜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고, 가산세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토지등 양도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당 항목만을 기재합니다.